| | |
|---|---|
| 의안번호 | 2205013 |
| 의 뢰 인 | 이정헌 의원 |
| 회 답 일 | 2024. 11. 22. |
| 추계번호 | 24B4617 |

#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 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7,500만원(연평균 3,5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○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 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) | 24 | 24 | 24 | 24 | 24 | 120 | 24 |
|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 | 11 | 11 | 11 | 11 | 11 | 55 | 11 |
| 계 | 35 | 35 | 35 | 35 | 35 | 175 | 35 |

주: 1.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·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
2.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
3.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 Ⅱ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5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제6조에 따른 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수립·시행하여야 함.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7항) |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2 | 안 제6조(인공지능위원회) | 인공지능사회의 구현,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고,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(제2항) | |
| | |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2항) | |
| 3 | 안 제9조(전문위원회 등) | 위원회는 심의・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나 자문 또는 위원장이 인공지능등 관련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는 연구・자문・검토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| |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하나로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(이하 “신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(제2항)<br>1.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・확산을 위한 시책의 수립・시행 지원 및 연구<br>2. 인공지능의 공정성・투명성・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・시행 지원 및 연구<br>3.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<br>4. 권고등 또는 위원회의 심의・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 및 사전검토<br>5.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검토 | |
| | |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 | |
| 4 | 안 제10조(국가인공지능센터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사회 구현,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둠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그 밖에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 |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5 | 안 제12조(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 동향・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, 기술의 연구·개발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<br>2.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・개발,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<br>3.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확산, 인공지능기술 협력・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<br>4.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<br>5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및 연구·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|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<br>1. 인공지능기술의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영향평가의 실시와 적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<br>2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0조제1항 각 호의 안전성 보호조치 사항을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<br>3.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0조제3항에 따른 비상정지를 인공지능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<br>4.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61조제2항에 따른 사생활등의 보호에 적합한 설계 기준 및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<br>5.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작·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또는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사업<br>6.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과 이용을 위한 국민의 인식개선, 올바른 이용방법과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<br>7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,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| 재량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의 결과를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보급하여야 함. 이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음(제3항)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6 | 안 제13조(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및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. 다만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에 따르고, 한국산업표준의 제정 ·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(제1항)<br>1.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<br>2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·연구개발<br>3.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| 재량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|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·강화하여야 함(제4항) | 의무규정 |
| | |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 | |
| 7 | 안 제14조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생산·수집·관리 및 유통·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(이하 “학습용데이터”라 한다)의 생산·수집·관리 및 유통·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 | 재량규정 |
| | |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제작 · 생산 · 수집 · 구축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·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(이하 “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”이라 한다)을 시행할 수 있음(제3항) | 재량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·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(이하 “통합제공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(제4항) | 의무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(제5항) | 재량규정 |
| | |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,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수행,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·관리 및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6항) |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8 | 안 제15조(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·활용 지원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·개발 성과의 확산<br>2. 인공지능기술을 도입·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<br>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(이하 "중소기업등"이라 한다)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<br>4.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융자·투자 또는 그밖에 필요한 지원<br>5. 그 밖에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br>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 | 재량규정 |
| 9 | 안 제16조(창업의 활성화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·지원 등에 관한 사업<br>2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·훈련에 관한 사업<br>3. 제19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<br>4.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<br>5.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<br>6.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·단체의 육성<br>7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<br>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음(제2항) | 재량규정 |
| 10 | 안 제17조(인공지능 융합의 촉진) | 정부는 인공지능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고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1 | 안 제18조(제도개선 등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인공지능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·제도의 연구,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3항) | 재량규정 |
| 12 | 안 제19조(전문인력의 확보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(제2항)<br>1. 인공지능 관련 해외 대학·연구기관·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·분석<br>2.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<br>3.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<br>4.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유치 지원<br>5.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<br>6.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3 | 안 제20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) | 정부는 인공지능·인공지능기술의 개발, 인공지능사회 및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정부는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산업에 종사하는 개인·기업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<br>1.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보・기술・인력의 국제교류<br>2. 인공지능산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・분석 및 제공<br>3. 국가 간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공동연구・개발 및 국제 표준화<br>4. 인공지능산업 관련 외국자본의 투자유치<br>5. 인공지능등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유치・참가 등 홍보 및 해외 마케팅<br>6.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등의 수출에 필요한 판매·유통체계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<br>7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재량규정 |
| | |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 | |
| 14 | 안 제21조(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등)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기업,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·물리적·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|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하여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| |
| | |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 |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5 | 안 제22조(대한인공지능협회의 설립) |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등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육성을 도모하며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·홍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인공지능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음(제1항) | 재량규정 |
| |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 및 인공지능 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(제4항) | |
| | |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,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,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5항) | |
| 16 | 안 제23조(인공지능 윤리원칙 등) | 정부는 인공지능사업자 및 이용자가 인공지능의 개발・이용과정에서 지켜야 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윤리원칙(이하 "윤리원칙"이라 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・공표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인공지능의 개발·활용 등의 과정에서 인간의 생명과 신체·정신적 건강 등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사항<br>2.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인공지능제품과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 관한 사항<br>3. 인간과 인류의 삶과 번영에 공헌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개발・활용 등에 관한 사항 | 재량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뢰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원칙이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·홍보 및 교육하여야 함(제2항)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7 | 안 제24조(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<br>1.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<br>2.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·제도의 정비<br>3.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<br>4.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·홍보<br>5. 인공지능사업자의 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·시행 지원<br>6. 인공지능사업자,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(이하 “단체등”이라 한다)의 인공지능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, 윤리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<br>7. 그 밖에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| 의무규정 |
| 18 | 안 제25조(인공지능 신뢰성 검·인증등 지원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·인증 활동(이하 “검·인증등”이라 한다)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<br>1.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<br>2. 검·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<br>3. 검·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·운영 지원<br>4. 검·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<br>5. 그 밖에 검·인증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br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소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검·인증등을 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 | 재량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19 | 안 제26조(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에 관련 자문을 요청할 수 있음(제2항) | 재량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음(제3항) | |
| | |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4항) | |
| 20 | 안 제30조(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) | 정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(제2항) | 재량규정 |
| |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(제3항) | 의무규정 |
| |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제4항) | |
| 21 | 안 제31조(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계청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등 관련 시책과 사업의 기획·수립·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등에 관한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를 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26조의2에 따른 통계와 연계하여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| |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·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 |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주요내용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22 | 안 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<br>1. 제12조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이용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<br>2.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의 생산·수집·관리 및 유통·활용 등에 관한 지원대상사업의 선정·지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추진<br>3. 제14조제4항에 따른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관리<br>4. 제16조에 따른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br>5.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·인증등 관련 지원<br>6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인공지능윤리의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| 재량규정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<br>1.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업자의 발굴<br>2.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·훈련<br>3.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화 지원<br>4. 제21조제2항에 따른 집적화 지원<br>5.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| |
| |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(제4항) | |

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 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 | 안 제12조(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) | - | 현행 사업 존재<br>-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|
| 2 | 안 제13조(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) | - | |
| 3 | 안 제14조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) | - | |
| 4 | 안 제15조(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·활용 지원) | - | |
| 5 | 안 제17조(인공지능 융합의 촉진) | - | |
| 6 | 안 제19조(전문인력의 확보) | - | |
| 7 | 안 제23조(인공지능 윤리원칙 등) | - | |
| 8 | 안 제24조(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) | - | |
| 9 | 안 제25조(인공지능 신뢰성 검·인증등 지원) | - | |
| 10 | 안 제31조(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) | - | |
| 11 | 안 제5조(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) | - | 미대상<br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본계획 마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계 기관이 민관 의견수렴을 통해 직접 작성할 예정으로, 연구용역 등 별도의 예산 편성 불필요 |
| 13 | 안 제18조(제도개선 등) | - | 미대상<br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정안의 제도개선은 정부의 행정적 사항에 해당하여 별도의 예산 편성 불필요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 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2 | 안 제10조(국가인공지능센터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국가인공지능센터를 두고,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나, 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을 위한 재정소요를 파악하기 곤란 |
| 14 | 안 제16조(창업의 활성화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사업의 구체적인 세부 기획이 아직 없는 상황임 |
| 15 | 안 제20조(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국제협력을 추진하고, 인공지능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촉진을 지원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|
| 16 | 안 제21조(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등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집적단지 대상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| 추계 여부 | 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 |
|---|---|---|---|
| 17 | 안 제22조(대한인공지능협회의 설립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설립한 대한인공지능협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협회의 구성규모, 사업규모 및 경비 보조의 필요성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|
| 18 | 안 제26조(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사례수집 및 연구 등을 진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례수집 및 연구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|
| 19 | 안 제30조(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정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|
| 20 | 안 제32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| ×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<br>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업무위탁은 개별 사업에 따른 간접비로 책정될 예정이며, 어떤 사업이 위탁될지 계획이 미수립된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움 |
| 21 | 안 제6조(인공지능위원회) | ○ |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| 22 | 안 제9조(전문위원회 등) | ○ |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,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(단위: 백만원)

<table>
<tr><th>조·항(조제목)</th><th>현행 사업(2024년)</th></tr>
<tr><td>안 제12조(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안전한 이용 지원)</td><td>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신뢰성기반조성)</td><td>-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(차별·편향 심화, 사생활 침해 등)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,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</td><td>3,523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안 제13조(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)</td><td>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신뢰성기반조성) 內 AI 표준화 과제</td><td>-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(차별·편향 심화, 사생활 침해 등)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,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(인공지능기술 표준화 과제)</td><td>20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<tr><td>안 제14조(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)</td><td>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초거대AI확산생태계조성)</td><td>글로벌 빅테크들의 초거대AI 독점에 국내 스타트업 등이 대응할 수 있도록 초거대AI 언어데이터 및 AI 데이터 개방·활용 인프라 지원</td><td>55,800</td></tr>
</table></td></tr>

<table>
<tr><th>조·항(조제목)</th><th>현행 사업(2024년)</th></tr>
<tr><td>안 제15조(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·활용 지원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바우처 지원)</td><td>기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</td><td>42,500</td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고성능 컴퓨팅 지원)</td><td>인공지능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학습용 및 추론용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임차하여 중소·벤처기업 등에 제공</td><td>13,2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안 제17조(인공지능 융합의 촉진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</td><td>초거대 AI 기반의 법률 전문 서비스의 개발·실증을 지원하여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률 업무의 효율성 향상 및 저비용·고품질 법률 서비스 제공</td><td>7,500</td></tr>
<tr><td>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</td><td>의료 전문영역에 초거대 AI 플랫폼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 개발·실증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를 통한 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</td><td>8,000</td></tr>
<tr><td>AI 심리케어·돌봄지원</td><td>AI를 활용한 심리케어 서비스 개발·실증을 통해 대국민 정신건강 수준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</td><td>6,000</td></tr>
<tr><td>AI 미디어·문화 향유 확산</td><td>초거대 AI 기반의 영상 콘텐츠 등 창작 활동 서비스 개발·실증을 지원하여 초거대 AI의 활용·확산을 촉진하고 한류 미디어·콘텐츠 분야 경쟁력 강화</td><td>9,000</td></tr>
<tr><td>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(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)</td><td>초거대 AI기반의 논문작성·검토 연구보조 등 서비스의 개발·실증을 지원하여 초거대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학술·연구활동의 효율성 증대</td><td>3,000</td></tr>
<tr><td>부처협업기반 AI확산</td><td>국민 체감도가 높고, 사회적 파급효과가 뛰어난 인공지능 서비스를 부처 협력을 통해 도입·확산하여 공공부문 AI융합 가속화</td><td>24,000</td></tr>
<tr><td>AI정밀의료SW 선도기반조성</td><td>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을 지원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 및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육성</td><td>19,838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조·항(조제목)</th><th>현행 사업(2024년)</th></tr>
<tr><td>안 제19조(전문인력의 확보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(교육훈련-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)</td><td>AI·AI반도체·융합보안 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, 산·학 공동 연구 교육 및 글로벌 협력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석·박사 인재양성</td><td>20,000</td></tr>
<tr><td>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</td><td>산·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양성</td><td>10,500</td></tr>
<tr><td>생성AI선도인재양성</td><td>국내 대학과 국내·외 생성AI 선도기술 보유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기반 新서비스 모델 발굴,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</td><td>3,5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안 제23조(인공지능 윤리원칙 등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신뢰성기반조성)</td><td>-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(차별·편향 심화, 사생활 침해 등)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,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</td><td>3,523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안 제24조(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신뢰성기반조성)</td><td>-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(차별·편향 심화, 사생활 침해 등)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,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</td><td>3,523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안 제25조(인공지능 신뢰성 검·인증 등 지원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신뢰성기반조성)內 민간AI 신뢰성시범인증 과제</td><td>-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(차별·편향 심화, 사생활 침해 등)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,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 - 민간 AI 신뢰성 시범인증</td><td>6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조·항(조제목)</th><th>현행 사업(2024년)</th></tr>
<tr><td>안 제31조(실태조사, 통계 및 지표의 작성)</td><td>
<table>
<tr><th>사업</th><th>개요</th><th>’24예산</th></tr>
<tr><td>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(AI 산업생태계기반마련)</td><td>AI통계·데이터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AI국가 전략 추진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개발을 지원하고, AI관련 대국민 정책 신뢰 확산에 기여</td><td>1,400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/table>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

❑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인공지능위원회, 안 제9조의 전문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

○ (인공지능위원회) 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수가 민간위원이므로,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2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[1)]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
○ (전문위원회 등) 인공지능위원회에 인공지능 신뢰성 전문위원회 등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하고, 전문위원회별로 6명의 민간위원을 배정하여 연구·자문·검토 등을 연 2회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

❑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·식비·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

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 ❑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6조)

○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2,000만원으로 추계(연평균 2,400만원)

- 민간위원은 20명으로,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,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

[표 3] 인공지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인공지능위원회 구성·운영 | 24 | 24 | 24 | 24 | 24 | 120 | 24 |

주: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·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 ❑ 전문위원회 등(안 제9조)

○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,500만원으로 추계(연평균 1,100만원)

-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, 민간위원은 6명으로,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, 회의 개최 횟수는 연 2회로 가정함

[표 4] 인공지능위원회 내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| 2026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합계 | 연평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| 11 | 11 | 11 | 11 | 11 | 55 | 11 |

주: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,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·운영비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 Ⅳ. 부대의견

❑ 제정안 중 현재 수행 중인 재정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# Ⅴ. 작성자

❑ 성명
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|
|---|---|---|
| 경제비용추계과 | 박인재 | 배아형 |

❑ 대표연락처

| 성명 | 전화번호 | 이메일 주소 |
|---|---|---|
| 박인재 | 02-6788-4650 | powerreset@assembly.go.kr |

# [참고자료] 현행 AI 관련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| 세부사업명 | 2024년 예산 | 사업개요 |
|---|---|---|
| AI정밀의료SW선도기반조성 | 19,838 | · 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 지원 및 정밀의료 SW 산업 육성지원 |
| DB산업육성(정보화) | 2,621 | ·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및 데이터 기업 역량 강화 |
| AI 미디어 · 문화 향유 확산 | 9,000 | · 영상, 이미지, 음원 생성 및 분석 등 미디어·문화 분야에 초거대 AI를 활용한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|
|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| 7,500 | · 초거대 AI 기반 법률서비스 개발을 통해 법률 전문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률 분야 AI 일상화 촉진 |
| 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 | 7,800 | · 연구자의 학술활동(논문 작성 등) 등을 보조하는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|
|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| 8,000 | · 건강상담, 질병발병 가능성 예측 등 선제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건강수명 향상 지원 |
| AI 심리케어•돌봄지원 | 6,000 | · 일상생활 속 부담 없는 정서장애 케어 지원 |
|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-CareNetwork 지원 | 4,000 | ·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· 실증 지원 및 생활 밀착형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확산 지원 |
|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확산 환경 조성 | 4,000 | · 초거대 AI 인프라 구성하여 융합플랫폼 실증 및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|
|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| 9,350 | · AI기반 농기계 자율작업 및 정밀농업 기술 개발·실증 |
|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| 10,000 | · 제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 융합 솔루션 개발·실증을 지원 |
|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| 5,000 | · 지역 의료기기 제조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생태계 저변확대 및 활성화 |
|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 | 40,700 | · 광주 AI집적단지 조성, AI인력양성(AI융합대학, 고급인재), 창업 지원 등 |
| K-Health국민의료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| 11,000 | ·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지원)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으로 데이터·AI융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 |
| 데이터활용 의료·건강생태계 조성 | 6,000 | ·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(AI)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·실증 및 사업화 등을 지원 |

| 세부사업명 | 2024년 예산 | 사업개요 |
|---|---|---|
|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 강화 | 61,390 | ・데이터 바우처,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,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데이터경제 가속화 |
|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| 86,801 | ・클라우드 이용확산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 |
| 데이터활용확산 정책지원 | 3,639 | ・「데이터산업법」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, 데이터 품질 인증·가치평가·분쟁조정·표준계약서 등 제도 시행 |
|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| 25,222 | ・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·수집·활용 활성화 |
|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| 24,000 | ・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AI융합 지원 |
|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| 119,623 | ・AI바우처,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지원 및 AI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 |
| SaaS혁신펀드 | 20,000 | ・혁신적인 SaaS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추진 |
|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조성 | 2,804 | ・공공·민간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·활용하고 데이터 산업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지원 |
|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개발(R&D) | 1,180 | ・다양한 분야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여, AI+X R&D 활성화 및 초기시장 창출 |
|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기술개발(R&D) | 7,000 | ・AI 기반의 공공·산업 등의 난제 해결을 위해 도메인 전문가와 AI 연구자의 협업 기반 AI 원천기술 확보 R&D |
|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(R&D) | 45,075 | ・AI 기술 한계 극복 및 인간이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구현으로 차세대 AI 핵심원천 기술 확보 |
|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술개발(R&D) | 1,400 | ・AI 분야 공개 경진대회 기반의 경쟁형 R&D 추진 및 우수팀의 후속연구 지원을 통한 AI 기반 확산 |
|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(R&D) | 480 | ・한국어 기반 사전학습을 통한 한국어 언어모델 구축 및 텍스트·이미지·비디오 생성·변환 등 멀티모달 기술개발 |
| AI정밀의료솔루션(닥터앤서2.0)개발(R&D) | 7,937 | ・폐암,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AI 의료 SW 개발 |
|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(R&D) | 4,000 | ・생성AI가 갖는 편향성·환각현상 등 한계극복을 위한 차세대 생성AI기술 개발 |
|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(R&D) | 2,070 | ・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R&D를 통한 산업 생산성 혁신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新제품·서비스 창출 |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